

## 「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」

제정 2024. 1. 1.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29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물품관리법」, 「국고금관리법」, 「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」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물품운용관)** ① 국립축산과학원 물품관리관(분임물품관리관) 소관의 물품운용관(분임물품운용관)을 [별표 1]과 같이 지정한다.

② 물품관리관(분임물품관리관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(분임물품운용관)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.

**제3조(출납공무원 등)**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물품출납공무원, 수입금출납공무원,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,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[별표 2]와 같이 지정한다.

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서별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.

**제4조(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)**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
**부 칙**<제298호, 2024. 1. 1.>

이 규정은 2024. 1. 1. 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물품운용관(제2조 관련)

관서명	물품운용관	분임물품운용관
국립축산과학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운영지원과 : 용도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서기관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단, 차량·유류·시설장비는 관리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서기관</li> <li>■ 상기 이외의 부서 : 각 부서장</li> </ul>	
축산자원개발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운영지원팀 : 운영지원팀 소속 용도담당 행정주사</li> <li>■ 상기 이외의 부서 : 각 부서장</li> </ul>
가축유전자원센터 한우연구소 가금연구소 난지축산연구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운영지원실 : 운영지원실 소속 행정주사</li> <li>■ 상기 이외의 연구실 : 각 연구실장</li> </ul>

[별표 2]

출납공무원 등(제3조 관련)

물품출납공무원(분임물품출납공무원)

관서명	물품출납공무원	분임물품출납공무원
국립축산과학원	■ 운영지원과 물품관리 업무담당	
축산자원개발부 가축유전자원센터 한우연구소 가금연구소 난지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		■ 운영지원팀(실, 이전추진팀) 물품관리 업무담당

수입금출납공무원(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)

관서명	수입금출납공무원	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
국립축산과학원	■ 운영지원과 수입 업무담당	
축산자원개발부 가축유전자원센터 한우연구소 가금연구소 난지축산연구소		■ 운영지원팀(실) 수입 업무담당

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

관서명	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
국립축산과학원	■ 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 업무담당
축산자원개발부 가축유전자원센터 한우연구소 가금연구소 난지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	■ 운영지원팀(실, 이전추진팀) 관서운영경비 업무담당

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

관서명	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
국립축산과학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운영지원과 용도 업무담당</li> </ul>
축산자원개발부 가축유전자원센터 한우연구소 가금연구소 난지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운영지원팀(실, 이전추진팀)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업무담당</li> </ul>